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 주택연금 고객 연금수령권 강화 및 신탁방식 주택연금 내규 정비

3.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이행청구요청 통지 유보기간 확대
- 나. 재공매 시 입찰횟수 확대(신탁방식)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5년 4월 22일까지(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
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장석진 차장(tjrwls120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913
- 팩스번호 : 0505-036-0953

붙임: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1부. 끝.

주택연금 채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보증채무이행 2.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방법 등 다. 이행청구요청 통지의 유보 1) 유보대상 가) ~ 나) (생략) 2) 유보기간 가) (생략) 나) 피보증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u><단서 신설></u>	제3장 보증채무이행 2. 보증채무이행 청구요청방법 등 다. 이행청구요청 통지의 유보 1) 유보대상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유보기간 가) (현행과 같음) 나) 피보증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u>다만, 물적담보가 충분하여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 단위로 2회 추가 유보할 수 있다.</u>	배우자 채무인수를 위한 유보기한 확대 운영
제4장 구상권관리 제1의4절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권의 실행 등 2. 공매공고 및 실시 가. 공매 진행 절차 1) ~ 2) (생략) 3) 공고등록 가) ~ 사) (생략) <u><신설></u> 4) ~ 7) (생략)	제4장 구상권관리 제1의4절 신탁방식 주택연금 담보권의 실행 등 2. 공매공고 및 실시 가. 공매 진행 절차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고등록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아래 '3. 가. 3)' 에 따라 공매 취하 후 재공고하는 경우 입찰회차 수를 소관부서장 전결로 7회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u> 4) ~ 7) (현행과 같음)	공매 재공고 시 입찰회수 운영 유연화
<u><신설></u>	<u>부칙 (13)</u> <u>이 기준은 2025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